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2026

제1호

## AI 활용 디지털성범죄 사례 분석 및 안전한 AI 활용 방안

- # AI 활용 디지털성범죄 사례와 위험성
- # 해외 AI 활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대응
- # AI 시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략: 정책 거버넌스 개선과 피해중심기술 육성을 함께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이슈 분석

## AI 활용 디지털성범죄 사례와 위험성

04

윤철희 연구관(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해외 동향

## 해외 AI 활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대응

07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이경하법률사무소)



전문가 제언

## AI 시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략: 정책 거버넌스 개선과 피해중심기술 육성을 함께

12

이재흥 상임이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시민기술네트워크)



부 록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및 피해자 지원 제도

16

---

##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1호를 펴내며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편집부

생성형 AI는 일과 일상생활 등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술이 성착취물을 제작·가공하고 유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또 다른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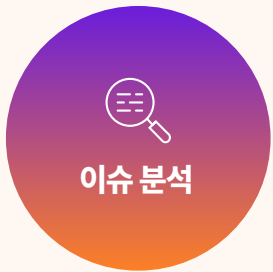
평범한 일상 사진만으로도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고,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성착취물을 대량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인사이트」 1호는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술과 국내외 법률·정책에 대한 분석부터 전문가의 제언까지 서로 다른 시선이 정책 발전의 입체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인사이트」 1호가 정책 현장과 국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모든 주체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



# AI 활용 디지털성범죄 사례와 위험성



윤철희 연구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사회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영상 합성, 음성 복제 등 다양한 AI 기술은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며 산업과 사회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ChatGPT, Midjourney, Stable Diffusion, Sora 등 생성형 AI 서비스는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는 교육·문화·방송·의료·보안·수사 등 사회 전 분야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특히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라 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과거의 디지털성범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 범죄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AI 기술로 실제 촬영 없이 특정인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하여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 중심의 과거의 디지털성범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일상적인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4년부터 경찰대학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sup>1)</sup> 연구를 통해 사람이 육안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딥페이크를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동시에 생성·조작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탐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생성형 AI 기술은 단순 얼굴 합성을 넘어 영상·음성·텍스트를 동시에 조작하는 복합 생성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복합적 변형과 다중 생성 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딥페이크 콘텐츠는 기존의 단일 모달리티 기반 탐지 기술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1) )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원)

## 2

###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개념과 기술적 특징

딥페이크 성착취물, AI 생성 아동성착취물, 음성복제 기반 성범죄 등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딥페이크 기술이 성착취와 선거, 금융, 보이스피싱까지 광범위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단순 개인 범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AI 기반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딥페이크 성착취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성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안전한 AI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I 기반 디지털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침해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유포·판매·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착취 등을 수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의 형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표정·음성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단순 얼굴 교체(Face Swap)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음성 합성, 립싱크, 표정 생성, 배경 편집, 신체 합성 등이 결합된 복합 생성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얼굴 합성, 음성 변조, 립싱크 조작, 배경 편집 등 다양한 AI 기술을 조합하여 하나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복합 생성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단순 이미지 조작 수준을 넘어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영화와 방송에서 사용되는 실시간 페이스 스왑(Face Swap)과 디에이징(De-aging) 기술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에서도 립싱크와 표정 연기의 재현이 가능한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이 범죄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전문 영상 편집 기술과 고가 장비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앱이나 무료 AI 프로그램만으로도 누구나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 수백~수천 개의 합성물을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실제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한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이다.

## 3

###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조작하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5년 4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발표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다.<sup>2)</sup> 경찰 발표에 따르면, 여성 아이돌·배우·BJ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3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13명이 구속송치되었다. 특히 주요 운영자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특정 여성 아이돌그룹 이름을 딴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약 1,100여 개의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딥보이스’ 기술까지 활용하여 실제 연예인이 저속한 발언을 한 것처럼 조작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이 사건은 기존 디지털성범죄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피해자의 비동의성이 극

2)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자 검거’ 브리핑(2025.4.11.)

#### 4

###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대와 위험성, 그리고 사회적 문제

단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sup>3</sup>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SNS 사진이나 공개 이미지를 수집한 뒤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얼굴을 합성하였고, 피해자들은 실제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 피해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 범죄의 대량생산 구조로 짧은 시간 안에 수백 개 이상의 성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영상 편집자가 수작업으로 작업해야 했지만, 현재는 AI 모델이 자동으로 얼굴과 표정을 합성한 후 유포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조직화 문제이다. 최근 AI 기반 성범죄는 제작자·유포자·운영자·판매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산업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가 단순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 청소년이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 없이도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성범죄와 차별화된다. AI 기술로 매우 정교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한 성착취가 아동성착취물(AI-CSAM)로 번지고도 있다. 실제 아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AI가 생성한 아동의 성적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문제를 야기한다. 아동 성착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범죄 욕구를 자극하여 실제 아동 대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범죄자 커뮤니티 형성과 성범죄 문화 확산의 매개체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딥페이크 기술이 가상자산 범죄와 결합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Koint가 발표한 「2025년 가상자산 관련 사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AI·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와 AI 기반 비싱(Vishing) 공격 등이 새롭게 부상한 핵심 위협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sup>4</sup>

AI 기반 성범죄는 피해자의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성을 가진다. AI 기술이 영상·음성·텍스트 등을 동시에 조작하는 복합 생성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AI를 활용한 성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결국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적 탐지 체계 구축과 법·제도 개선, 플랫폼 책임 강화, 국제 공조, 예방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기술 혁신과 윤리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6권 제2호, 청주대학교

4) Koint, 「2025년 가상자산 관련 사건 동향 보고서」



# 해외 AI 활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CSAM) 대응



이경하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이경하법률사무소

## 1

### AI 활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보고서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이 2026. 3. 24. 발표한 ‘AI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AI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sup>5</sup>이 3,443건 확인되었고 이는 전년도보다 무려 26,385% 증가한 수치였다<sup>6</sup>. 위 아동 성착취물 중 65%(2,233건)는 강간, 수간, 고문 등 가장 심각한 수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A 등급’임을 지적하면서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이 범람하는 온라인 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sup>7</sup>.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에서 분석한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sup>8</sup>의 유해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이 실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경우, 그 자체로 피해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중대히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의 수단이 되는데, AI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이러한 수단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두 번째는 가상의 아동을 소재로 삼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의 확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환상을 실현하고, 연습하고, 정교화하는 것에 기여하고, 극단적인 아동 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아동 성범죄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sup>10</sup>. 세 번째는 가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이 실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착취물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이 범람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피해아동이 실존하는 아동 성착취물을 식별해내는 것에 상당한 수사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등의 대응이 지연되고, 피해아동이 실재하는 사안임에도 가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아동 성착취물로 오인되어 수사 대상에서 누

5) Child Sexual Abuse Material의 번역

6) IWF, “AI CSAM Report 2026”, 2026, 5p.

7) IWF, 같은 보고서, 5p.

8) AI Child Sexual Abuse Material의 번역

9) IWF, 같은 보고서, 15p, 30p

10) IWF, 같은 보고서, 26p

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네 번째는, 아동 성착취 가해자들이 실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착취물에서 AI를 활용하여 얼굴 등 피해아동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변경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수법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 수법의 연장선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아동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일 뿐이며 피해아동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아울러,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의 보고서에는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피해 중 약 95%가 여아이며 AI 활용 아동 성학대 이미지의 요구, 제작 등 과정에서 여성 차별이 두드러지고,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의 피해 양상은 성별에 따라 압도적으로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3</sup>.

UNICEF에서도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체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UNICEF가 2026. 2. 발행한 ‘AI와 아동 성학대와 성착취’라는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AI의 등장으로 인해 아동 보호 분야의 위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고품질 생성 모델은 상당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했는데, 오늘날 가해자들이 성적 학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비약적으로 용이해졌다”라고 진단하면서 “실재하는 아동이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AI 활용 아동 성학대 콘텐츠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실재한다”고 평가했다<sup>14</sup>. 한편, UNICEF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의 분석과 유사하게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의 범람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학대 콘텐츠에 등장하는 아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실재하는 아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5</sup>. 또한, 가해자들이 AI를 활용하여 실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손쉽게 제작하고,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로서 피해아동에게 갈취, 협박 등 추가 범죄에 나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한다. 특히 UNICEF는 유럽 아동 및 가족 위기 대응팀, 인터폴이 ‘피해 차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1개국에서 최소 120만 명의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이미지가 AI 도구를 활용하여 성적인 형태로 합성되었다는 신고를 했다고 평가한다<sup>16</sup>. 아울러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피해는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여아들이 비대칭적으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예시로서 한국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가해자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17</sup>. UNICEF 보고서는 지금이 여성과 아동에게 전례 없이 위험한 환경을 강조하며 아동 성착취물의 정의에 AI로 생성한 자료를 포함시키고, AI 업계의 모든 관계자는 AI 설계 단계부터 오용,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사 등 안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sup>18</sup>.

11) IWF, 같은 보고서, 19p

12) IWF, 같은 보고서, 19p, 26p

13) IWF, 같은 보고서, 18p, 41p.

14) UNICE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2026. 2, 1~2p.

15) UNICEF, 위 보고서, 2p

16) UNICEF, 위 보고서, 2p

17) UNICEF, 위 보고서, 2p

18) UNICEF, 위 보고서, 3~4p.

UNICEF,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 등 국제기구에서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널리 지적됨에 따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형사정책은 크게 ①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 성착취물에 포함시키는 입법, ② 인공지능 설계, 개발, 운용 단계에서 아동 성착취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한 AI 플랫폼의 관리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 및 정책, ③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 도구의 소지, 공급 등을 규율하는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영국은 검사관 및 사법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에서 만화, 삽화, 애니메이션 등 사진 처럼 사실적이지 않은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포함하여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sup>19</sup>. 나아가, 영국은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을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개정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거나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는 행위,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도구를 소지, 공급,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다<sup>20 21</sup>.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생성 도구를 소지, 공급, 제공 또는 제공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비단 해당 도구가 아동 성착취물 생성 도구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 생성 도구임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유효한 면책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였다<sup>22</sup>. ‘아동 성착취물 생성 도구’의 범위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거나 그 생성을 촉진하도록 제작 또는 개조된 모든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등이 포함된다<sup>23</sup>. 즉, AI를 이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거나 생성을 촉진하는 AI 도구를 제작, 소지, 공급,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의 토대가 되는 기술적 환경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은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거나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행위, 아동 성착취물 생성 도구를 소지, 공급,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에서 범죄 주체가 자연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 범죄 행위가 단체의 동의나 묵인 하에 저질러졌고, 단체와 관련된 인물 또는 단체와 관련인으로 자처하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sup>24</sup>. 한편, 아동 성착취 및 학대를 조장할 의도로 관련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인터넷 활동’의 범위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타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지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것, 인터넷 서비스의 콘텐츠 접근을 관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 인터넷 서비스 내 콘텐츠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 관

19) IWF, 같은 보고서, 21p

20) 경향신문, “영국, ‘아동성착취 부추기는 AI’ 규제 추진…세계 최초”, 2025-02-03

2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6/20/contents/enacted>, Crime and Policing Act 2026

2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6/20/contents/enacted>, Crime and Policing Act 2026

23)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제동향, “영국, AI 기반 아동 성착취물 생성 방지를 위한 법안 제출”, <https://klri.re.kr/Platform/law/trend/6e7a85c9-cd28-4be6-9dde-317069ab787a>, 2025-04-15

2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6/20/contents/enacted>, Crime and Policing Act 2026

리자 등 역시 아동 성착취물을 조장할 의도로 관련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sup>25</sup>.

미국은 영국과 달리 아동 성착취물 생성 도구에 관한 제작, 제공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한다<sup>26</sup>. 미국 연방의회는 2025. 1. 10.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웹사이트와 네트워크상 딥페이크 기술 악용의 억제 방안법(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일명 「TAKE IT DOWN Act」 법안을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TAKE IT DOWN Act」는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AI 도구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을 학대, 굴욕, 괴롭힘, 비하 등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협박, 강요, 갈취 등을 목적으로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sup>27</sup>.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 절차를 읽기 쉬운 평이한 언어로 고지·설명할 의무와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이 이러한 고지 및 삭제 의무를 합리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18조(a)(1)(B)항이 정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정의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재 규정을 두었는데<sup>28</sup>,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나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중지 명령을 위반할 시, 위반 건당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부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통신법」 제230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해왔던 기존의 법실무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sup>29</sup>.

AI가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거나 생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AI 플랫폼의 대처는 미비한 실정이다.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초국가적인 범죄가 된 만큼, 해외 주요국들도 AI 플랫폼 규제를 위한 국제 규범 발효, 국제 공조 등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근절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발효하였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유럽 연합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유럽 연합에 기반을 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된다<sup>30</sup>. 디지털 서비스법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규제 기관에 공개할 의무 등 광범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 위반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구

### 3

#### 주요 AI 플랫폼 관리, 규제를 위한 국제 규범

2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6/20/contents/enacted>, Crime and Policing Act 2026

26) IWF, 같은 보고서, 11p

27) 김현경. (2025, 8, 11). 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전자매체본]. KISO 저널, 60, 12-19. <https://journal.kiso.or.kr/?p=13402>

28) 김현경. (2025, 8, 11). 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전자매체본]. KISO 저널, 60, 12-19. <https://journal.kiso.or.kr/?p=13402>

29) 김현경. (2025, 8, 11). 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전자매체본]. KISO 저널, 60, 12-19. <https://journal.kiso.or.kr/?p=13402>

30) 위키피디아, Digital Services Act, [https://en.wikipedia.org/wiki/Digital\\_Services\\_Act](https://en.wikipedia.org/wiki/Digital_Services_Act)

제 조치, 임시 조치 및 약속 준수 지연 일수마다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주기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sup>31</sup>.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위 디지털 서비스법에 근거하여 미국 일론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Grok)이 생성, 확산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해당 플랫폼이 서비스 배포 전 사전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sup>32</sup>. 유로폴(EUROPOL)은 2024. 11. 경 19개 당국을 지원해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던 범죄 조직의 일원을 검거하였다<sup>33</sup>. 한편, 유럽연합은 2024. 5. 인공지능법을 발효하였고, 해당 법안은 AI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차별금지, 민주주의 및 법치 존중과 같은 EU의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그 사용을 금지하고, AI 플랫폼이 수용불가 AI 시스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와 직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글로벌 연 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큰 금액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sup>34</sup>.

---

31) 위키피디아, Digital Services Act, [https://en.wikipedia.org/wiki/Digital\\_Services\\_Act](https://en.wikipedia.org/wiki/Digital_Services_Act)

32) 테크경제 하드보일드, “일론머스크의 X와 그록AI,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생성으로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조사 직면, 2026. 1. 27.

33) EUROPOL, “25 arrested in global hit against AI-generated child sexual abuse material”, <https://www.europol.europa.eu/media-press/newsroom/news/25-arrested-in-global-hit-against-ai-generated-child-sexual-abuse-material>

34) SW중심사회 10월호, “유럽연합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3p



# AI 시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략: 정책 거버넌스 개선과 피해중심기술 육성을 함께

#

이재홍 상임이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시민기술네트워크

1

들어가며

2

미국  
‘플랫폼 기업의  
AI 딥페이크  
삭제의무 법안’  
상원 만장일치  
제정과  
한국의 과제

텔레그램과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다크웹, 약물판매조직이 하나로 단단히 연결돼 거대한 생태계를 이룬 지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치밀하고 복잡해지고, 기존 범죄자들의 흔적과 자료들은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실시간으로 파생, 아류, 신생 수법들의 탄생과 진화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굴레에 갇힌 상태입니다. 4년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무려 400% 증가한 이유입니다. 지난 해 국감에서 이광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9월에 이미 벌써 1,300건을 돌파했습니다. △ 2021년 156건 △ 2022년 160건 △ 2023년 180건 △ 2024년 1,202건 △ 2025년 1~9월 1,318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의 첫번째 쟁점이자 핵심은, 일단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쉽게 다크웹까지 숨어드는 터라, 발견 즉시 ‘삭제’ 하는 게 피해예방, 문제해결 첫 걸음입니다.

미국에서도 초당적 지지와 시민사회의 호응으로, AI 플랫폼 기업이 신고를 접수하면,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 하는 법(TAKE IT DOWN)이 지난 해 2025년 5월, 속전속결 통과·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딥페이크로 조작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제작과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며, 플랫폼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10대 청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조작된 딥페이크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제작·유포 되면서,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성폭력피해전국네트워크(RAINN,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 <어린이재단 연맹> 과 같은 단체는 물론,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가 뒤따랐습니다. 상원은 지난 2024년 12월 만장일치, 하원은 2025년 4월에 찬성 409 대 반대 2표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적극적인 행동과 지지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1)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비동의 음란물 및 딥페이크 음란물 신고를 받으면, 검토하여 48시간 내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고, 해당 프로세스 마련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2)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 행위도 명확히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호주도 2021년 <온라인 안전법>으로 딥페이크 제작 금지를 규정했고, 독일 역시 <네트워크집행법>에서 불법 콘텐츠 24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 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규정을 <온라인안전법>에 두어 플랫폼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딥페이크나 리벤지포르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규제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유관 규정이 있지만,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플랫폼 기업에 요청해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규정은 미약합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플랫폼 기업들의 ‘투명성보고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노력, 신고삭제결과, 책임자지정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제출 시에만 처벌이 있고, 허위나 부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사후적이고 느슨한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해외 플랫폼 기업, AI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내국법인 중심의 국내법만으로는 점점 더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어린이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관련 연구와 법제화 노력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또한, 2026년 1월에 시행된 <AI기본법>에는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인권보호조치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채, AI 생성 표시의무제 (워터마크 등)만 의무 규제조항으로 명기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도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다시 시행이 1년 유예됐습니다.

이 법에 따른 최상위 국가정책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외돼 참여치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수년째 방미통위 등 정부가 매년 1순위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던 <AI이용자보호법>은 아직도 미궁 속이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 방미통위가 정상화되고 위원 신규 임명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 법에 사회적 염원과 엄격한 필수규제를 담아 공론화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유관 정부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처인 <AI성평등정책과>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AI성평등전략포럼’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하고 연속개최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가다듬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처 정책자문위원회에 포용기술 분과를 신설해 기술이해와 정책 전문성,

### 3 사람을 살리는 기술,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돕고 구하는 기술과 함께

대안실행력을 갖춘 민간위원들을 큰 폭으로 확충하여 해당 분야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도 5월 6일 출범했습니다.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약 5만 3천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50만 건 이상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반복되는 재유포, 삭제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수많은 불법 유해사이트로 인해 피해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 해결과 국제공조협력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가 기획됐고 마침내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관계 부처의 자체 플랫폼 구축·운영 중심 사고와 관성을 내려놓고, 대신 부처별 AX, DX (AI 및 디지털 전환) 내부인력 충원과 역량을 높이는 데 과감히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자체플랫폼을 구축하면, 필수 안전보안 정합성 절차 때문에 무조건 3년 이상 걸립니다(R&D 1년, ISP 1년, 기획구축준공 1년). 지금 같은 급격한 AI 대전환기에는, 시시각각 매일 기술이 바뀌어 정식 오픈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 사이 정책 공백기에 수많은 피해자와 사상자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막상, 플랫폼이 오픈되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내부에는 기술 전문가가 없으니 컨트롤이 불가능해, 산하기관을 통해 외주용역을 돌리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쉬이 부실도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방치되어 또 다시 중복 개발되는 고아소프트웨어(Orphan SW)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거운 정부 주도의 플랫폼구축 못지않게, 기술전문성과 정책 인사이트를 동시에 가진 융합인재를 한두명이라도 부처 내 상시인력으로 두는 게 더 효과적이고 우선순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민간의 ‘피해중심 기술’을 연구개발 지원하는 정책과 기금이 꼭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착취 범죄가 웹사이트를 일망타진한 후, 텔레그램과 다크웹으로 완전히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만든 공익적 기술 플랫폼인 텔레그램과 다크웹이, 개인정보와 인권을 위협하는 거대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텔레그램은 그나마 범죄조직 잡는 데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 성착취 그루밍 온상이었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채팅 기능을 폐쇄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크웹은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하지 않기에 범죄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범죄 영상 등 신고나 우리 정부 요청이 있어도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은, 글로벌한 전문가 평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의 효용입니다. 정부 요청에도 꿈쩍없던 글로벌 기업이,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했을 때 삭제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 대응에도 글로벌한 민관 협업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해결, 대응 정책의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피해자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이 대세가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해자 핸드폰으로 촬영해 유포하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쉽게 적발되고 처벌 받는다는 것이 범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해자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성착취물 전송기록이 남지 않도록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폰 에어드롭(AirDrop)을 통해 가해자 폰으로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법을 자

기 이익을 위해서 코칭, 컨설팅해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몰래 음료에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물을 파는 업자들과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등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증거 보존 방법을 알리고 포렌식 지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직후 놀라고 당황해서 핸드폰에 있는 유일한 증거를 지우거나 핸드폰을 폐기하고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당국도 피해자 폰으로 촬영된 내용이기엔 ‘상호동의’ 하에 진행된 것 아닌지 의심을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포렌식은 너무나 비쌉니다. 개인이 전문 법무법인을 통할 경우, 300~5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전문기술 소프트웨어 원가 자체가 비싸고, 수사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이 아닌 경우 아무에게나 운용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과 피해자 지원 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 분야를 개척하고 기술 개발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민간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에서 ‘범죄피해자기금’ (CVF)을 설치·관리하며 이 문제에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재원은 세금이 아닌 가해자 벌금, 몰수금, 특별과태료 등으로 조성됩니다. 198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법’을 근거로 합니다. 기금들은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어 피해자 지원 기술과 함께 운용됩니다.

대표적인 전담기관이 <매디슨 테크 클리닉>입니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내에 설치운영 중인데, 연구자와 기술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로 함께 운영됩니다. 무료 비공개 상담과 포렌식 지원, 온라인 계정 정밀 조사를 통해 범죄 생존자 개인정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보안 이슈 전체를 파악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사후 연구분석을 통해 사업과 활동에 피드백되어 계속 개선·진화해 나갑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유관 범죄는 폭증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존 범죄기록과 수법, 운영진과 유저로 참여한 경험, 언론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류, 파생, 신생 수법을 행하는 이들이 줄지 않고 권력 과시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대부분이라, 피해자를 협박해 중간책이나 공범으로 포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몇 방의 개설관리자인 우두머리는 18세, 17세였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료로 100만원을 내야 하는 방도 있지만 인산인해입니다. 스토키퍼웨어 구매 사이트는 많은 경우 회원이 54만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사이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400% 폭증한 이유입니다. 청소년 자살 시도는 5년새 300% 증가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구시대의 허술한 규제법을 개혁해, 신속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과 강력한 집행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중심기술 연구’ 및 지원과 투자, 피해자를 위한 고가의 포렌식 지원에도 함께 정책이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는 SNS나 채팅앱,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고민을 들어주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하 '아청 시스템')은 SNS나 채팅앱, 오픈채팅방 등에 게시되는 성착취 유인정보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미리 탐지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센터')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아청 시스템은 ① 키워드 탐지, ② 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 ③ 신체 노출도 판단, ④ 아동·청소년 여부 추정, ⑤ 유사 이미지 대조 등의 과정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청 시스템은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신고와 삭제요청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등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디성센터는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함께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중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편집물을 찾아내어 추가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채널 디포유스 또는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지원 제도>

|                      |                                                                                                          |                                                                                                                   |
|----------------------|----------------------------------------------------------------------------------------------------------|-------------------------------------------------------------------------------------------------------------------|
| 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채널 디포유스 | <br><b>@d4youth</b>    | <br><b>@d4youth1020</b>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전국 대표전화<br><b>1366</b> |  홈페이지<br><b>d4u.stop.or.kr</b> |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전국 대표전화<br><b>1366</b> |                                                                                                                   |